를 제외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附 則

이 조례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
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불균일과세등)"를 "(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로 하고, 第1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第3項을 削除하고, 第2項중 "第1項의"를 "第1項 및 第2項의"로 하며,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家口 2住宅에 該當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第3項으로 한다.

①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각각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免除한다.

②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第112條 第1項 및 第131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出한 取得稅 및 登錄稅額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適用時限)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地方公社등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2項중 "공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을 "공단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하고 법인의 등기시에는"으로 한다.

附則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適用時限)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
市稅課稅免除條例중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都市整備整頓에따른市稅課稅免除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項중 "서울特別市無許可建物整備事業補償金支給條例" 第4條 第1項의"를 "自治區 無許可建物整備에대한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의"로 한다.

附則 第2項을 第3項으로 하고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適用時限) 이 條例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서울特別市無許可建物整備事業補償金支給條例" 廢止후부터 適用한다.

서울特別市社會敎育施設에대한
市稅課稅免除에관한조례중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社會敎育施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